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246
------	------

2024. 12. 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16일, 김경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경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서울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현행 조례는 서울브랜드총괄관에 대한 자격, 업무범위,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민간전문가로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을 적용받는다 수행한 자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실시한 자문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제8항)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 동 개정안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자문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별 조례에 명시하여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음.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 ① ~ ⑦ (생략) <u><신설></u>	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서울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2023년 3월 동 조례의 개정 따라 직책이 신설되었음.

- 해당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민간전문가로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1)에 따른 자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결과 보고서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지난 2024년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수당지급 근거인 월별 활동내역이 활동명과 참석자만을 기재하는 약식 형태이고 자문의 내용과 자문에 따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조례에서 요구한 결과 보고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한 바 있음.

< 기존 서울브랜드총괄관 활동내역 예시 >

일자	담당부서	유형	자문· 활동 사항
****	서울브랜드담당관	자문	내 용 : 신규캐릭터 홍보 관련 자문 참 석 자 :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캐릭터마케팅팀장
****	서울브랜드담당관	자문	내 용 : 신규캐릭터 홍보물 제작 관련 자문 참 석 자 :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비전특보, 브랜드기획팀장, 캐릭터마케팅팀장
****	서울브랜드담당관	자문	내 용 : 신규캐릭터 홍보 관련 자문 참 석 자 :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비전특보, 브랜드기획팀장, 캐릭터마케팅팀장

- 따라서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자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결과 보고서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1)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는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건별로 지급하고,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형식이나 내용을 규정하는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향후 시행규칙 제정, 방침 수립 등 민간전문가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46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김 경, 김기덕, 박승진,
서준오, 유정희, 이상훈,
이용균, 이원형, 최기찬
의원(9명)

찬 성 자: 김규남, 송경택 의원(2명)

1. 제안이유

-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서울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현행 조례는 서울브랜드총괄관에 대한 자격, 업무범위,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민간전문가로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을 적용받는바 수행한 자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실시한 자문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제8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p> <p>① ~ ⑦ (생략)</p> <p><u><신설></u></p>	<p>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p> <p>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¹⁾에 규정 되어있는 수행한 자문에 대한 결과 보고서 제출의무를 개별 조례에 명문화 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는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건별로 지급하고,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자문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
2. 특별자문 일반자문의 150% 이내